

경제 규제혁신 TF
23-6-2
(공개)

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

2023. 4. 19.

관계부처합동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	3
III. 주요 추진과제	
1.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	4
2.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	5
3. 사업 효율성·유연성 제고	6
4. 업체 권익 보호 강화	7
IV. 향후 추진계획	8
[참고1]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(총 22건)	9
[참고2] 계약의 종류 및 공사계약 낙찰방식	14

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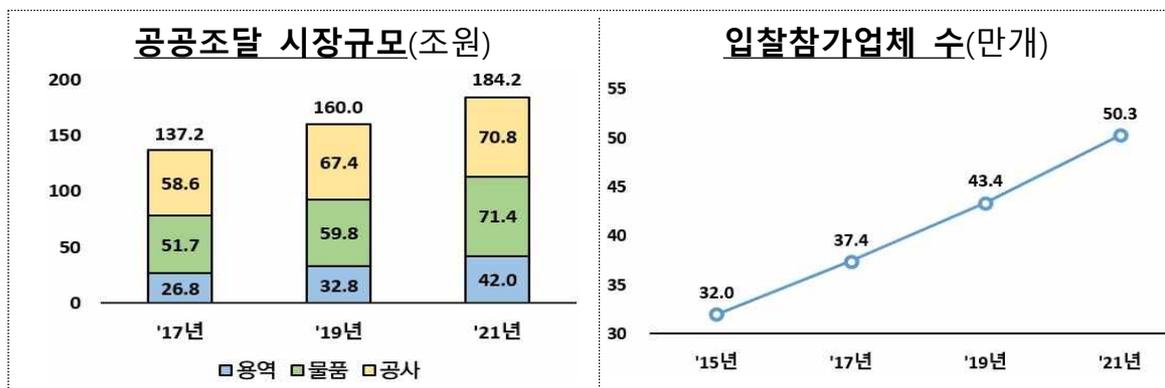
1 국가계약제도 및 공공조달 현황

□ 계약제도는 일반경쟁입찰을 근간으로 다양한 방식 운영 중

- 국가계약제도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,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, 제한경쟁, 지명경쟁 허용
-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*(100억원 이상), 적격심사낙찰제**(100억원 미만)와 기술형 입찰(턴키·대안 등) 운영 중
 - * 공사수행능력, 입찰가격,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득점자 선정
 - **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
- 물품·용역의 경우 적격심사제를 중심으로, 협상에 의한 계약*, 2단계 입찰(규격·기술→가격), 다수공급자계약** 방식 등 운영 중
 - *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 통해 낙찰자 결정
 - **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품질·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의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구매

□ 공공조달 시장은 年 184조원 규모, 입찰참가업체는 50.3만개('21년 기준)

- 공공조달 시장은 年 184조원(GDP대비 9%수준) 규모로 확대 추세
 - * 공공조달 규모(조원) : ('17) 137.2 → ('19) 160.0 → ('21) 184.2
- 국가계약법 대상(국가·공공기관)은 103.2조원으로 56%('21년) 수준
- 입찰참가업체도 50.3만개로 지속 증가 中
 - * 조달청 입찰참가업체(만개) : ('17) 37.4 → ('19) 43.4 → ('21) 50.3



2 국가계약제도 개편 필요성

□ 그간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공정성 등 제고

-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고 적격심사제·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
 - 특히 「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*」을 추진('20~'21년중 42개 제도 개선과제 완료)하여 계약제도의 공정성 등을 제고

* ①혁신·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, ②공정 계약문화 정착, ③제도 유연성·효율성 제고

□ 다만, 기업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

- (계약대가 문제) 공사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, 과도한 경쟁 및 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저하 문제 등 발생
 - * "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자재 계약금액조정(단품조정) 요건 완화 필요"(대한전문건설협회)
- (절차 부담) 설계서 등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늦어지는 경우, 또는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미 게재 시 서류준비 부담
 - * "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 필요"(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)
- (사업 추진 부담) 턴키 입찰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기술형 입찰 참여 시 업체의 비용부담 문제 등 발생
 - * "턴키입찰 기본설계를 위해 인력, 예산을 先 투입한 탈락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있으므로 설계보상비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"(국가철도공단)
- (제재 부담)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 시 경제활동 제약
 - * "경미한 사안은 국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사유를 확대하고, 공공기관 발주계약에도 '과징금 제도' 도입 필요"(대한건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)

☞ 주요 발주기관 TF*, 업계·전문가 간담회, 연구용역 등을 거쳐 총 22개 제도 개선과제 마련

* 기재부·국토부·조달청, LH·도공·철공·수공·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('22.8월~)

Ⅱ.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

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



방향	주요 추진과제 (12개)
<p>■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(특정규격 자재 비중 1% → 0.5%) ② 물품·용역 협상계약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(60%→70%) * 단, 소방·軍·警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%로 상향 ③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(약 87% → 약 88%)
<p>■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 (예: 건설사업관리 20억원 → 50억원 이상 등) ②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기고,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 ③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
<p>■ 사업 효율성·유연성 제고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턴키입찰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지급(6~8개월 단축) ②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·합리화 (예 : 종합공사 3억원 → 4억원, 전문공사 1억원 → 2억원 등) ③ 종합심사제 공사 하도급계획 변경비율 확대(10%→ 20%)
<p>■ 업체 권익 보호 강화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 확대(9개 → 12개) 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같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③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을 확대

Ⅲ. 주요 추진과제

방향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

□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* 요건 완화(특정규격 자재 비중 1 → 0.5%)

* 공사비(재료비+노무비+경비)의 1%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%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

○ 활용도가 낮은* 現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**하여 조정대상 확대

* 조달청 공사 7,372건(17년~22.4월)에 대해 총액 조정은 8,864건이나 단품 조정은 8건

** (現) 특정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1% 초과 → (改) 공사비의 **0.5% 초과**

⇒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

□ 물품·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(現 60 → 改 70%)

* 단, 소방·軍·警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%로 상향

○ 물품·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(60 → 70%), 특히 고위험직종(소방·軍·警) 안전장비는 80%로 상향

⇒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, 입찰기업의 경영여건 개선

□ 전기 등 기타공사*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(現 약 87 → 改 약 88%)

* 전기·정보통신·소방·문화재 공사

○ 3~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(86.745%)을 종합·전문공사* 수준(87.745%)으로 상향 ⇒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체 보호

* (종합)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·관리·조정을 통해 시공(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)
(전문)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(석공·도장공 등 29개 업종)

<적격심사 낙찰하한율(%)>

구분	3억원 미만	3~10억원		10~50억원	50~100억원
		현행	개선		
종합공사	87.745	87.745		86.745	85.495
전문공사	87.745	87.745		86.745	85.495
기타공사	87.745	86.745	87.745	86.745	85.495

방향 2

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

□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 상향(現 15~25 → 改 30~50억원)

○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·현실화

⇒ 중소기업의 입찰비용 부담 등 문제 해소

※ 대형공사(300억 이상) 중 건설엔지니어링(용역)의 종합심사제 발주율('19.1~'22.3) : 80.1%(건수기준), 83.7%(금액기준)

<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>

구 분	현 행	개 선(안)
기본설계	15억원 이상	30억원 이상
실시설계	25억원 이상	40억원 이상
건설사업관리	20억원 이상	50억원 이상

□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앞당기고,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

○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 공고일로 변경 ⇒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*

* 현재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이 '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'로 규정 →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·검토 지연 우려

○ 발주기관에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 ⇒ 입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 제고

□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 제출하도록 개선

○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*하도록 개선

* 현재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

⇒ 공사 입찰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

방향 3

사업 효율성 · 유연성 제고

□ 턴키 입찰(설계·시공 일괄 입찰)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 지급(약 6~8개월 단축 효과)

○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*를 실시 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서 조기 지급**

* 복수의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→ 적격자는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위 평가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(약 6~8개월 소요) → 낙찰자 확정 후 탈락업체에 보상비 지급

** (現)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 → (改)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

⇒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시행 관련 부담 완화

□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·합리화

(예 : 종합공사 現 3 → 改 4억원, 전문공사 現 1 → 改 2억원 등)

○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*

* 지명경쟁 개선안 : 종합공사 3→4억원, 전문공사 1→2억원, 기타공사 1→1.6억원

⇒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의 적정성* 제고

* '95년 제정 이후 '98년 1번만 기준금액 상향(종합공사 限, 1→3억원)

□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(現 10 → 改 20%)

○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비율을 완화(現 10% → 改 20%)

⇒ 직접시공이 필요한 경우 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

방향 4

업체 권익보호 강화

□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 확대(現 9 → 改 12개)

- 現 입찰참가제한 사유(총 19개) 중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모든 사유(12개)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토록 개선(現 9 → 改 12개)
- ⇒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한 사유가 확대되어 기업에 입찰참여 기회 확대

※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3개 사유 반영(안)

- ①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·이행 방해의 경우 그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
- ② 서류의 위조·변조 등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
- ③ 사기 등의 경우 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입찰참가제한 대체 제재금 제도 도입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'제재금' 제도 도입 추진
- ※ 현재 국가·지자체만 과징금 권한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 → 입찰참가제한 받은 업체는 공공 발주사업 입찰 제한
- ⇒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금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업 경제활동 제약 해소

□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 확대

- 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기간* 및 대상** 확대

* (기간) 원인행위 있었던 날부터 15일 → 20일 이내, 원인행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→ 15일 이내 등 확대

** (대상) 국가계약법령상 추가된 부당특약, 계약금액 정산, 입찰보증금 국고귀속, 계약해제·해지 관련 추가 반영

- ⇒ 국가계약상 이의신청 제도와의 형평성, 입찰자 권익보호 제고

IV. 향후 추진계획

- **업계 건의사항** 및 **기업부담 완화 과제**는 신속히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
- **계약예규 개정사항**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추진하여 '23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
- **시행령 개정사항**은 '23년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
- **법률 개정 필요 과제**는 '23년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

참고 1

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(총 22건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개정사항 (추진일정)
1.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			
1	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	<p>현황 공사 자재 계약금액조정 제도*의 엄격한 요건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**</p> <p>* 공사비(재료비+노무비+경비)의 1%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%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 금액 조정</p> <p>** 조달청 공사 7,372건('17년~'22.4월)에 대해 총액 계약 금액조정은 8,864건이나 단품 계약금액조정은 8건</p> <p>개선 공사 자재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을 확대</p> <p>* (現) 특정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1% 초과 → (改) 공사비의 0.5% 초과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'23.下)
2	물품·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	<p>현황 현재 물품·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60% 수준</p> <p>개선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입찰하한선을 70%로 상향(現 60% → 改 70%)</p> <p>- 특히 협상계약으로 조달하는 고위험 직업군(소방·軍·警)의 안전장비 입찰하한선을 80%로 상향하여 우수장비 지급 도모</p>	계약예규 ('23.上)
3	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	<p>현황 3~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(86.745%)이 종합전문공사(87.745%)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</p> <p>개선 3~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(86.745 → 87.745%)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 보호</p>	계약예규 ('23.上)
4	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	<p>현황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(기준: 최저가격 입찰자 → 변경: 균형가격 근접자*)을 간이중심제에만 적용중('21.12월~)</p> <p>* 입찰금액의 상하위 20%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금액 평가</p> <p>- 또한,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</p> <p>개선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을 일반중심제로 확대하여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동점자 처리기준*을 추가하여 낙찰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</p> <p>* ①공사수행능력점수 + 사회적책임점수(배점한도 내) → ②균형가격 근접자 → ③공사수행능력점수 → ④사회적책임점수 → ⑤최근 1년간 중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→ ⑥추첨</p>	계약예규 ('23.上)

연도	과제명	주요 내용	개정사항 (추진일정)
2.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			
5	건설엔지니어링 종합 심사낙찰제 기준 금액 상향	<p>현황 중소규모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입찰비용 부담 가중 * 대형공사(300억 이상) 중 건설엔지니어링(용역)의 종합심사제 발주율('19.1~'22.3) : 80.1%(건수기준), 83.7%(금액기준)</p> <p>개선 기술용역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* * (기본설계) 15억원 → 30억원 이상, (실시설계) 25억원 → 40억원 이상, (건설사업관리) 20억원 → 50억원 이상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23.下)
6	설계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 시로 개선	<p>현황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로 규정 →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·검토 지연 우려</p> <p>개선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</p>	계약예규 (23.上)
7	업체편의 등을 위해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무 공개	<p>현황 현재 입찰공고시 관련 서류 교부 방식이 발주기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, 발주기관이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미 게재 시 입찰자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부담 발생</p> <p>개선 발주기관에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하여 입찰자의 편의 제고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23.下)
8	중심제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 하도록 개선	<p>현황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 계획서 오류에 대해 보완 불가 → 입찰자의 부담 증가</p> <p>개선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하여 입찰자의 부담 완화</p>	계약예규 (23.上)
9	스마트 턴키 제출 서류 간소화	<p>현황 로봇 조립시공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스마트 턴키*는 제출서류가 많아 (기본보고서 등 약 15종) 입찰업체 부담 * 업체 선정시 기술성 평가 비중이 높아 스마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에 유리 -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 턴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스마트 턴키로 발주된 중소규모 공사에도 동일하게 요구 중</p> <p>개선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는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(5종 내외)로 간소화* * 기본보고서·도면 등 핵심서류(5종 내외)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산화</p>	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(23.下)

연년	과제명	주요 내용	개정사항 (추진일정)
3. 사업 효율성 제고			
10	턴키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 (약 6~8개월 단축)	<p>현황 턴키(설계·시공 일괄) 입찰, 기술제안(기본설계)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기본설계 보상비 지급하여 시간 소요, 입찰업체 설계 비용 부담</p> <p>* 복수의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→ 적격자는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위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 (6~8개월 소요) → 낙찰자 확정 후 탈락업체에 보상비 지급</p> <p>개선 탈락자 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(약 6~8개월 단축)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, 계약예규 (23.下)
11	지명경쟁입찰 기준 금액 상향·현실화	<p>현황 공사 지명경쟁의 경우,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보다 낮아 제도 활용도 저조</p> <p>* 소액수의 요건 : 종합공사 4억↓ 전문공사 2억↓·기타공사 1.6억↓ 지명경쟁 요건 : 종합공사 3억↓ 전문공사 1억↓·기타공사 1억↓</p> <p>개선 공사 지명경쟁 금액기준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</p> <p>* 종합공사 3→4억원, 전문공사 1→2억원, 기타공사 1→1.6억원</p> <p>-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지명경쟁 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는 기준금액 또한 상향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(23.下)
12	종합심사제 하도급 계획 변경시 직접 시공 변경비율 확대(現 10%→改 20%)	<p>현황 종합심사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후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가능한 비율이 10%로 제한 → 직접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이 어려움</p> <p>개선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비율을 20%로 완화</p>	계약예규 (23.上)
13	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하도록 명문화	<p>현황 물품구매계약 시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·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낙찰자 외 물품 제조사와 물품구매협약 체결 필요</p> <p>- 발주자가 물품구매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아 물품 구매비가 낙찰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포기 등의 문제 발생 가능</p> <p>개선 발주자가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</p>	계약예규 (23.上)
14	간이중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사항 (21.12월)을 공사 입찰유의서(계약예규)에 반영	<p>현황 '21.12월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변경되었으나, 동일한 내용의 공사입찰 유의서는 개정되지 않아 해석에 혼선</p> <p>개선 변경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필요</p> <p>- (낙찰자 결정) 입찰금액이 낮은 자 →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</p>	계약예규 (23.上)

연도	과제명	주요 내용	개정사항 (추진일정)
15	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시행자가 정밀발굴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'정밀발굴조사'를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	<p>현황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(문화재청 고시)이나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근거가 없어 경쟁입찰을 통해 정밀발굴기관을 선정하여 개발사업지연 등 문제 발생</p> <p>개선 문화재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* 지방계약법령은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수의계약이 가능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23.下)
16	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 또는 보장내용 확대가 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가입을 우선 고려	<p>현황 일부 대형공사의 경우 "발주기관 또는 시공사"의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, 보장내용 확대.예산 절감 사유로 "발주기관의 직접가입" 의무화 필요성 제기 * '21년 예결위 허영 의원실 지적사항</p> <p>개선 규모의 경제로 보험료절감이 가능하거나,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직접가입 우선 고려토록 개선</p>	계약예규 (23.上)
4. 업체 권익 보호 강화			
17	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 확대(現9개 → 改 12개)	<p>현황 현재 입찰참가제한 처분사유 총 19개 중 9개의 사유에 한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과징금 대체 가능</p> <p>개선 입찰참가제한 사유(총 19개) 중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모든 사유(12개)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토록 개선 (現 9 → 改 12개)</p> <p>※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3개 사유 반영(안)</p> <p>①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.이행 방해의 경우 그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</p> <p>② 서류의 위조.변조 등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</p> <p>③ 사기 등의 경우 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23.下)
18	공기업.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	<p>현황 공기업.준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와 달리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없음*</p> <p>* 현재 국가.지자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</p> <p>-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발주기관별(국가 vs 공기업 등) 제재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</p> <p>개선 공기업.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'제재금' 제도* 도입</p> <p>*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</p>	공공기관 운영법 (23.下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개정사항 (추진일정)
19	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 확대	<p>현황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, 이의신청기간이 짧아 입찰자 권익 구제 수준 미흡 우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청구인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과 이의신청기간 등이 달라 형평성 등 문제 발생 소지 <p>개선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 신청 대상 및 이의신청기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이의신청 대상) 국가계약법령상 추가된 부당특약, 계약금액 정산, 입찰보증금 국고귀속, 계약해제 관련 추가 반영 - (이의신청 기간) 원인행위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, 원인행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(당초 각 15일 10일 이내) 	공기업계약 사무규칙,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('23.下)
20	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합리화	<p>현황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부정당 제재 처분한 이후, 추가로 인지된 부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재 처분</p> <p>개선 과거 제재 처분 당시 인지하지 못한 위반 행위 추가 적발시 기존 제재를 고려하여 업체에 과중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</p>	국가계약법 시행규칙 ('23.下)
21	계약금액이 변경 되지 않는 계약내용 변경시에도 하수급 인에 통보 의무화	<p>현황 계약금액조정 시에는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,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통보 전까지 알 수 없어 적기 대응 곤란</p> <p>개선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지 않은 계약변경을 할 때도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</p>	계약예규 ('23.上)
22	술 발주기관 대상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	<p>현황 현재 국가·공공기관은 위원회 설치여부가 재량이나, 지자체는 旣 의무화(지방계약법)</p> <p>개선 조달참여 기업의 계약관련 질의·시정요구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</p>	국가계약법 시행령 ('23.下)

참고 2

계약의 종류 및 공사계약 낙찰방식

1. 계약의 종류

기준		주요 내용
계약 목적	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념) 계약목적물이 건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인 계약 ▪ (유형) 건설공사(종합공사, 전문공사) / 전기공사 / 정보통신공사 / 소방공사 / 문화재수리공사 등
	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념) 계약목적물이 물품의 제조·구매인 계약
	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계약목적물이 용역수행인 계약 ▪ (유형)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기술용역(엔지니어링용역, 학술용역 등) / 그 외 단순 노무(청소) 등 일반용역
계약 체결 형태	금액결정 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확정계약) 계약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▪ (개산계약)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방법 ▪ (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) 예정가격* 중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 완료 후 해당 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방식 <p>*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갖춰두는 가액</p>
	금액결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총액계약)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, 대부분의 계약이 총액계약의 형태를 가짐 ▪ (단가계약) 일정기간 동안 수요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하는 계약방법,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등의 납품 등에 활용
	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단년도계약) 1회계연도(1.1~12.31) 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계약 ▪ (다년도계약)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단독계약) 계약대상자가 1인인 통상적인 계약방법 ▪ (공동계약) 계약대상자가 2인 이상인 계약방법
경쟁 형태	경쟁입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경쟁입찰계약) 입찰공고 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경쟁계약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방법 - 제한경쟁계약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법 - 지명경쟁계약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방법
	수의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수의계약)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

2. 공사계약 낙찰방식

방식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합심사 낙찰제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ransform: rotate(180deg);">일반</div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ransform: rotate(180deg);">간이</div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념) 공사수행능력, 입찰가격,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▪ (대상) 입찰공고금액 300억원 이상 공사 ▪ (평가기준) 공사수행능력, 입찰금액, 사회적책임(가점) 합산하여 최고점자가 낙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수행능력 시공실적, 매출액비중, 배치기술자, 시공역량 등 입찰금액 균형가격(입찰금액 상·하위 20% 제외 평균가격)에 근접한 순으로 점수를 산정, 공종별 가격 적정성도 심사(감점) 사회적책임 건설안전, 공정거래, 지역경제 기여도 등 최대 2점 가점 ▪ (대상) 입찰공고금액 100억~300억원 공사 ▪ (평가기준) 일반종합심사제 기준 대비 중소기업 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수행능력은 완화하고, 가격평가 기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수행능력 일반종합심사제 대비 시공평가결과, 매출액 비중은 제외하고, 시공실적, 배치기술자 평가는 완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적격심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입찰공고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 ▪ (평가기준) 최저가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(95점)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이행능력은 시공경험, 경영상태, 신인도 등을 평가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91 1220 1358 1429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공사규모</th> <th colspan="2">점수비중</th> <th rowspan="2">통과 점수</th> <th rowspan="2">낙찰 하한율</th> </tr> <tr> <th>이행능력</th> <th>가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억~50억</td> <td>50</td> <td>50</td> <td>95</td> <td>85.50%</td> </tr> <tr> <td>50억~10억</td> <td>30</td> <td>70</td> <td>95</td> <td>86.75%</td> </tr> <tr> <td>10억~3억</td> <td>20</td> <td>80</td> <td>95</td> <td>87.75%</td> </tr> <tr> <td>3억 미만</td> <td>10</td> <td>90</td> <td>95</td> <td>87.7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낙찰하한율 : 계약이행능력 만점을 가정 시,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</p>	공사규모	점수비중		통과 점수	낙찰 하한율	이행능력	가격	100억~50억	50	50	95	85.50%	50억~10억	30	70	95	86.75%	10억~3억	20	80	95	87.75%	3억 미만	10	90	95
공사규모	점수비중			통과 점수	낙찰 하한율																							
	이행능력	가격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억~50억	50	50	95	85.50%																								
50억~10억	30	70	95	86.75%																								
10억~3억	20	80	95	87.75%																								
3억 미만	10	90	95	87.75%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술형입찰</p>	<p>[기술형 입찰의 종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턴키)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와 가격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실시설계·시공을 일괄하여 맡기는 방식 ▪ (대안) 원안·실시설계(발주기관 작성)에 대해 입찰자가 동등이상의 실시설계(대안)를 제시하는 방식 ▪ (기술제안)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를 검토하여 시공계획, 공사비 절감방안, 공기관리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을 제시하는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본설계 기술제안,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2가지 유형 <p>[대상공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로 300억 이상 대형공사, 300억 미만 고난도 복합공사에도 활용 ※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국토부)가 기술형입찰 여부 및 낙찰자 평가방식 심의·결정 																											